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4,238,317	14,827,150
일반회계		465,562,346	13,966,870
특별회계		28,675,971	860,279
	기타특별회계	28,675,971	860,2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765,472	352,96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2,057	17,462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1,099,262	32,978
	수질개선특별회계	10,212,781	306,383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94,040	8,82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68,101	128,043
	주차장특별회계	454,258	13,62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무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352,666천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내에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한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상호 이용할 수 있다.